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2-92
----------	---------

제출연원일 : 2002. . . .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개정이유

- 김제시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그동안 읍·면·동에 위임하여 추진해오던 정화조 설치·준공 및 청소업무 등을 시 본청으로 이관 추진하기 위함.
-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대상농가에서는 축산폐수를 자체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부득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경우 처리장사용료를 운영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비용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수수료 감면 권한을 시장으로 조정(안 제12조)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업무중 위임규정 삭제(안 제21조)
- 허가대상농가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처리장사용료를 축산농가의 일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개정(안 별표 1)

3. 참고사항

- 관계규정
 - 읍면동 기능전환 행자부 지침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계획제출(전북도 수질67436-25, 2002.1.30)
- 기 타
 - 입법예고(2002. 6. 1 ~ 6.21.)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2002.10.24 ~ 11.13.)결과 : 의견 없음

김제시조례 제 호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읍·면·동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1중 축산폐수수집수수료 요금액(제11조제1항 관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축산폐수수집수수료 요금액(제11조제1항 관련)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요 금
축 산 폐 수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계	1ℓ	12원
		수집수수료	1ℓ	6원
		처리시설 사용료	1ℓ	6원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계	1ℓ	8원
		수집수수료	1ℓ	6원
		처리시설 사용료	1ℓ	2원
	규제미만 축산폐수배출시설	계	1ℓ	7원
		수집수수료	1ℓ	6원
		처리시설 사용료	1ℓ	1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성명·분뇨량 등에 대하여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한다</p> <p>③ (생략)</p>	<p>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p> <p>②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_____ 시장 _____</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1조(권한의 위임)</p> <p>①시장은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생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p> <p>1.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처리장처리비 징수</p> <p>2.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장 처리비 감면</p> <p>3.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p> <p>4.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포탈된 사용료 징수</p> <p>②시장은 권한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p> <p>1.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이행 통지 및 촉구안내에 관한 사항</p> <p>2.건축법 시행령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사항의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p> <p>3.법 제10조의 처리용량 5입방미터이하의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p>	<p>(삭제)</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분뇨수집수수료 요금액(제11조제1항 관련) (생략) 축산폐수수집수수료 요금액(제11조제1항 관련)</p>	<p>[별표 1] 분뇨수집수수료 요금액(제11조제1항 관련) (현행과 같음) 축산폐수수집수수료 요금액(제11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부 과 대 상</th> <th style="width: 15%;">부 과 기 준</th> <th style="width: 15%;">요 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축 산 폐 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ℓ 9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수집수수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1ℓ 6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처리시설 사용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1ℓ 3원</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ℓ 8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집수수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1ℓ 6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처리시설 사용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1ℓ 2원</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규제미만 축산폐수 배출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ℓ 7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집수수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1ℓ 6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처리시설 사용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1ℓ 1원</td> </tr> </tbody> </table>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요 금	축 산 폐 수	계	1ℓ 9원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수집수수료	1ℓ 6원	처리시설 사용료	1ℓ 3원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계	1ℓ 8원	수집수수료	1ℓ 6원	처리시설 사용료	1ℓ 2원	규제미만 축산폐수 배출시설	계	1ℓ 7원	수집수수료	1ℓ 6원	처리시설 사용료	1ℓ 1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부 과 대 상</th> <th style="width: 15%;">부 과 기 준</th> <th style="width: 15%;">요 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축 산 폐 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ℓ 12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수집수수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1ℓ 6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처리시설 사용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1ℓ 6원</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ℓ 8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집수수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1ℓ 6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처리시설 사용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1ℓ 2원</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규제미만 축산폐수 배출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ℓ 7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집수수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1ℓ 6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처리시설 사용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1ℓ 1원</td> </tr> </tbody> </table>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요 금	축 산 폐 수	계	1ℓ 12원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수집수수료	1ℓ 6원	처리시설 사용료	1ℓ 6원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계	1ℓ 8원	수집수수료	1ℓ 6원	처리시설 사용료	1ℓ 2원	규제미만 축산폐수 배출시설	계	1ℓ 7원	수집수수료	1ℓ 6원	처리시설 사용료	1ℓ 1원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요 금																																															
축 산 폐 수	계	1ℓ 9원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수집수수료	1ℓ 6원																																															
	처리시설 사용료	1ℓ 3원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계	1ℓ 8원																																															
	수집수수료	1ℓ 6원																																															
	처리시설 사용료	1ℓ 2원																																															
규제미만 축산폐수 배출시설	계	1ℓ 7원																																															
	수집수수료	1ℓ 6원																																															
	처리시설 사용료	1ℓ 1원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요 금																																															
축 산 폐 수	계	1ℓ 12원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수집수수료	1ℓ 6원																																															
	처리시설 사용료	1ℓ 6원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계	1ℓ 8원																																															
	수집수수료	1ℓ 6원																																															
	처리시설 사용료	1ℓ 2원																																															
규제미만 축산폐수 배출시설	계	1ℓ 7원																																															
	수집수수료	1ℓ 6원																																															
	처리시설 사용료	1ℓ 1원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2-93
----------	---------

제출년월일 : 2002.

제 출 자 : 김제시장

1. 개정이유

- 환경부·농림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에서 공동으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2001. 2. 21)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한 조례개정 필요
- 그간 업체의 잦은 부도와 영세성으로 인한 처리장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관계법령의 부재로 적절한 지원이 어려워 금번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여 처리장 운영관리의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폐수처리장 운영관리비 및 설치비를 지원하여 처리장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입주업체의 부도로 인한 폐수처리장 설치 용자 미수금 상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 30조)
- 기존업체의 채무승계 항목을 삭제함(현 조례 제3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환경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통합 제정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2001. 2. 21)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협의 실시

다. 협의 등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 표 : 별첨

2) 입법예고(2001.10.27~11.16) : 특이사항 없음

3) 사전계획서여부 : 여

김제시조례 제 호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처리장”이라 함은 폐수관거에서 유입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물리·화학·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정화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제2항중 “환경관리공단에”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처리장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원인자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1. 부담비용 : 구조물 시공비, 설계감리비 및 행정경비 등 사업수행 부대비
 2. 부과기준 : 오폐수량, 오염부하량, 부지분양면적, 건축연면적, 종업원수를 감안하여 시장이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작성한 비용부담계획에 의함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처리장의 관리 및 운영비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원인자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1. 부담비용 : 인건비,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등
 2. 부과기준 : 오폐수량, 오염부하량, 부지분양면적, 건축연면적, 종업원수를 감안하여 시장이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작성한 비용부담계획에 의함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 제목“(권리·의무의 승계)”를“(부과금의 보조)”로 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입주예정업체의 미입주·입주업체의 도산, 휴폐업 등으로 인하여 처리장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용이 체납되어 처리장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비용의 일부를 시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 1. ~ 6. (생략) <신 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처리장”이라 함은 폐수관거에 서 유입되는 공장폐수 및 생활 오수를 물리·화학·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정화시키는 시설을 말한다.</p>
<p>제5조(처리장 관리운영) ①(생략) ②협의회장은 제1항의 처리장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u>환경관리공단</u>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p>	<p>제5조(처리장 관리운영) ①(현행과 같음) ②-----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p>
<p>제15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장시설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게 납부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 분양을 받은 사업자(이하 “최초사업자”라 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 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이하 “증설사업자”라 한다) ②(생략)</p>	<p>제15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처리장 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원인자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1. 부담비용 : 구조물 시공비, 설계 감리비 및 행정경비 등 사업수행 부대비 2. 부과기준 : 오폐수량, 오염부하량, 부지분양면적, 건축연면적, 종업 원수를 감안하여 시장이 입주기 업체와 협의하여 작성한 비용 부담계획에 의함 ②(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20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사업자는 오·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③(생략)</p>	<p>제20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처리장의 관리 및 운영비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원인자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담비용 : 인건비,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등 2. 부과기준 : 오폐수량, 오염부하량, 부지분양면적, 건축연면적, 종업원수를 감안하여 시장이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작성한 비용부담계획에 의함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30조(권리·의무의 승계) 본처리구역내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제30조(부과금의 보조) 시장은 입주예정업체의 미입주·입주기업체의 도산, 휴폐업 등으로 인하여 처리장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용이 체납되어 처리장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비용의 일부를 시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p>